

【문 7】 집행보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②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이면 가능하다.
-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신청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문 8】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증서는 기관력이 없으므로 증서에 적힌 청구가 당초부터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③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④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의사표시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문 9】 경매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단독으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은 가능하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수소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집행법원이 경매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10년을 도과한 경우라면 경매신청을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문11】 1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 원), 2순위로 전세권(전세금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신청이 있고 절차비용(집행비용)으로 500만 원이 소요된 사례에서 최저매각가격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법원은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른 통지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위 경매절차를 속행시키려면 위 ①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④ 위 사안에서 2순위 전세권자의 신청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은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12】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매각기일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의 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입찰마감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일체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13】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14】 부동산 경매절차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②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위 ②항의 경우,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위와 같이 담보책임을 물을 경우에 배당의 전후에 관계없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할 수도 있고,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도 있다.

【문15】 보전집행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 ② 주식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자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주식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 ④ 무효가 아닌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해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문16】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다.
- ②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④ 집행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이를 할 수 있다.

【문17】 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서 일부 채권자의 기재를 누락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등기일은 2008. 8. 25.이다)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0. 11. 1.이다)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였다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④ 선행압류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문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해지 후인 98. 3. 4. 위 임차보증금채무가 5,000만 원으로 확정)에 관하여 96. 12. 7. 甲 가압류 4,000만 원, 96. 12. 16. 乙 압류 3,000만 원, 97. 6. 26.(전부명령 제3채무자에의 송달일) 甲 본압류 및 전부 4,000만 원이 이루어진 경우, 甲의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②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후 선행의 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고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으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사유, 집행채권의 소멸·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 및 압류한 다른 채권자 등 제3자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소멸하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

【문19】 보전처분신청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지 그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
- ③ 법원이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로소 담보제공을 명하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문20】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 ③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